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361

개인택시면허 발급 시 동일회사 근속요건 등 경력인정 차별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시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을 동일 회사 근속경력이 없는 자에 대한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나.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이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이하 “이

사건 면허규정"이라 한다)에서 택시분야 1순위에 동일한 택시회사에서 6년 이상 근속할 것이라는 요건을 규정한 것은 동일회사 근속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운전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고 택시 운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나. 또한, 이 사건 면허규정은 퇴사 후 1년을 초과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로 인해 장기간 근무로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기대하는 운전자로 하여금 회사의 부당한 대우에도 퇴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 제2호는 관할 관청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훈령인 「택시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6조 제6호는 관할관청이 동일업체 근속경력을 우대하는 경우 그 경력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동일업체 근속 경력의 우대를 인정하고 있다.

2) 또한, ○○시 관내 택시회사 중 동일한 택시회사에 장기근속한 경

우 해당 근로자는 성실성이 높은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있으며, 동일회사 근속규정이 삭제될 경우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 등으로 관련업계의 고용불안정 등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운수 종사자들의 이직은 주로 근무 초기인 1~2년 사이에 이루어지므로 약 4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이미 회사의 근무체계에 만족하고 익숙해진 상태라고 보아야하며 그 후에는 이직하는 경우가 드물다. 또한 최근 ○○시의 개인택시사업면허 취득자의 택시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임을 고려할 때 6년의 근속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이들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3) 퇴사 후 1년을 초과하는 경력을 불인정하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최초 운전종사일로부터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까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근무한 회사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1년 초과 이전의 경력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인정사실

1) 이 사건 면허규정 별표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발급 우선순위’ 중 택시분야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택시분야 1순위의 가등급 및 나등급 모두 동일회사 근속경력으로 5년 및 6년을 각 규정하고 있어 해당 동일회사 근속경력이 없는 택시운전자의 경우 1순위에 해당될 수 없다.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발급 우선순위>

구분	순위	내 용	비율
택시	1순위	가등급. ○○시 택시 사업장에서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택시노조 ○○시지부 조합원이고, 면허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 5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고, 노사화합에 공이 많아 ○○지방노동사무소장이 추천한자 (1명)	81%
		나등급.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시 소재 동일회사에서 6년 이상 근속중인 자	
	2순위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3순위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회사에 4년이상 근속중인 자	
	4순위	택시를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2) 우리위원회는 □□시, ■■■시, △△광역시, ▲▲시, ▽▽광역시, ▼▼시, ◎◎시 등에 대해 동일회사 근속자에게 개인택시면허를 우선해 부여하는 것은 운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이동을 제한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근속 사실이 택시운전에 필요한 법규준수성, 숙련성과 상관성이 없음에도 우대하는 것은 장기근속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07진차138, 06진차269 등 다수)한 바 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이 사건 면허규정이 택시운전자에 대해 동일회사 근속요건을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 면허신청자의 성실성 등의 반영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동일회사 장기근속이 면허 신청자의 성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 없고, 택시 운전에는 필요한 법규 준수성, 숙련성, 무사고 운전경력 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의 타당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는 피진정인으로부터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택시운전자 중 해당 동일회사 근속경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이 사건 면허규정은 피진정인으로부터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택시운전자가 우선순위 1순위의 나등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일회사 근속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소 6년 간 현재의 회사에서 사직하지 못하는 등 자유롭게 직장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므로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의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의 경우 과거 6년 동안 5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을, 화물자동차, 건설기계의 경우 5년 이상

의 운전경력 중 5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을,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각종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1년간 10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을, 복합 경력이 있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택시회사에서 퇴사한 후 1년 안에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그 합산된 경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퇴사 후 1년을 초과한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운전경력 간 공백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공백기간 이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기준의 합리성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2) 합산 결과 같은 기간의 운전경력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공백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 경력과 그렇지 않은 경력 간에는 지리 숙지도, 업무의 숙련성 등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차등 대우하는 것에는 일응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며, 그 경력을 구분하기 위한 공백기간의 기준을 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진정인이 상위 법령의 규정 및 경력 간 차이 등을 고려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들에 대해 이전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가.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발급시 동일 택시회사 장기근속을 우선순위 요건으로 하는 것은 해당 근속경력이 없는

자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진정내용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9.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

관 련 규 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과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

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⑦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공고일이전 2년이내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